

「알 권리」와 타인의 권익침해

-최근 중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김동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I. 서론

최근 인기연예인 김성희씨의 명예훼손사건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와 타인의 권익침해 사이의 갈등을 재조명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론 형성의 주체인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공적 관심사에 관해 보도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권한의 행사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민의 알 권리와 시민의 권익침해간의 대립을 해결하는 고리는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이 글은 개인주의적, 공리주의적 언론자유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익 논의에 덧붙여 우리 현실에서의 위상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시민의 권익침해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사용된 사례는 1986 년과 1987 년 언론중재사례 집 중 45 건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II.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시민권익침해

「국민의 알 권리」가 언론자유에 있어 주요한 학문적 개념으로 정착된 것은 50 여년전인 1936 년 Harold Cross 의 논의로부터이다. 그 동안 국민의 알 권리는 주로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정보에의 접근(access)이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가 갖는 기능은 자아실현, 진리달성, 합리적 결정, 균형 있는 사회발전, 권위에 대한 파수견, 국민의 정치참여 등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가 되는 사건에 관해 보도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보도하는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언론의 상업주의적 속성, 즉 선정주의적, 폭로주의적 보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러한 인격권의 침해는 주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요약된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성이나 신망에 대한 침해를 말하며 미국의 뉴욕 주 형법은 명예훼손을 문서, 인쇄물, 초상, 인쇄된 그림 (사진), 사인 등에 의한 악의 있는 공표로서 ①생존해 있는 사람이나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증오비방, 경멸, 조롱에 노출시키는 것, ②타인으로 하여금 개인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원인, ③개인의 직업이나 사업 또는 협동이나 교제관계에 손상을 초래하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사항이 허락 없이 공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 받는 개인의 홀로 있을 수 있는 사적 권리로 정의된다. 프라이버시권리 침해는 ①개인의 사적인 사스러운 일을 당혹하게 하는 공적 폭로 ②성명, 초상의 남용 ③사사의 왜곡된 공표 ④사적 생활, 독거, 은둔생활이나 조용히 지낼 권리에 대한 침입 등이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을 어떻게 비교 형량해서 한계를 설정하는가는 어려운 과제이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부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함이 바람직하나, 이를 이유로 언론의 책임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해결의 하나로 진실적시, 실질해악(actual malice) 그리고 공익을 들고 있다. 공익의 범주로는 공직자 (public officer)로부터 공적 인물(Public figure) 그리고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공적 인물로는 배우,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자발적인 유명인과 범인, 그 가족, 피해자 등의 비자발적 공적 인물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사회는 이와 관련된 판례가 미비하여 중재사례로 본 한국적 상황을 진단, 공익기준의 설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I. 신재사례에 나타난 권익침해의 유형

최근 2 년간의 언론중재 사례 중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에 관련된 사례를 정리, 제소자의 직업, 대상매체, 내용 그리고 처리결과 등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표 2 참조)

IV. 중재사례에 나타난 권익침해의 특징

1. 인기연예인관련 사례

인기연예인관련 사례를 보면 직업으로는 가수와 영화배우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문제가 된 언론매체는 총 9건 중 8건이 주간지와 여성월간지였으며, 합의건수는 총 9건 중 5건으로 56%로 나타나 연평균 합의비율 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언론사가 인기연예인에 대한 권익침해 현상이 비교적 많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중재신청 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인기연예인의 동거설, 스캔들, 호스티스설, 자살기도설, 깊은 관계설, 결혼예정설 등으로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인기연예인이 자발적인 공적 인물(publicfigure)이라고 할 경우, 그들에 대한 보도한계는 어디까지 설정되어야 하는가? 예를 들면 1987년도 영화배우 L씨 사례는 언론사의 사실보도주장으로 불 성립 되었는바, 그 내용은 「취재 당시 상황으로 결혼일자 확정과 영화출연 매듭예정은 사실보도이었다며 정정보도는 할 수 없고 해명보도는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영화배우 L씨는 「허위사실을 보도하면서 가족들까지 흥미거리로 삼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하라」는 것이다. 이 사례는 중재가 불 성립된 후, 영화배우 L씨가 1987년 11월 27일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신청인들의 결혼일자(1988. 3. 19)가 발표됨에 따라 1988년 3월 14일 소를 취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보면 인기연예인의 결혼일자와 그와 관련된 영화출연 매듭예정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는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1〉 1986년도 중재사례에 나타난 권익침해의 유형

직업	대상매체	처리결과	신청내용
1. 인기연예인과 그친지			
1) 영화배우	주간오락지	취하	- 동거설과 관련 취재기자를 폭행한 것처럼 보도하여 해명기사 게재
2) 가수	월간오락지	합의	- 잡지표지에 여가수를 돼지로 그려 사과문 게재
3) 탤런트	여성월간지	합의	- 남녀 탤런트간에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정정
4) 미스코리아	여성월간지	합의	- 통상용 호스데스였던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신청인의 해명수기 게재
5) 가수 부인	중앙일간지	취하	- 극악먹고 자살기도했다는 보도는 허위이므로 정정하라
6) 가수 애인	주간오락지	취하	- 날조된 기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정정하라
2. 기업관련 인물			
1) 병원장	여성월간지	합의	- 본인과 면담한 바 없는데도 인터뷰 한 양 보도하여 정정보도
2) 운송업체사장	중앙일간지	취하	- 분쟁당사자 일방의 의견만 보도한 것은 권파보도라고 주장
3) 운송협회장	월간전문지	불성립	- 운송협회회를 비판한 기사가 왜곡되었다고 주장
4) 식품회사사장	서울TV	취하	- 왜곡된 증거코미디물로 인해 명예훼손되어 정정보도
5) 주유소주인	지방일간지	취하	- 신청인의 철조망공사로 인해 휴게소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보도는 허위라며 정정요구
6) 비디오취급업자	지방일간지	취하	- 음란비디오테이프 취급업자인 것처럼 보도하여 정정
7) 장의사업자	지방일간지	취하	- 불법영업을 한 장의사의 상호를 다른 동업자의 상호로 잘못보도하여 정정요구
8) 폐기물처리업자	주간전문지	합의	- 특정산업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오보하여 정정
9) 회사차량주임	주간전문지	합의	- 회사차를 치분한 직원을 중고자동차 불법등록대행자로 오보하여 정정
10) 다방주인	지방TV	취하	- 일일차집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요구
3. 공직자와 그친지			
1) 공무원기관사	중앙일간지	취하	- 철길전널목사고는 기관사 잘못이 아니므로 정정하라
2) 前대통령가족	월간여성지	합의	- 사생활을 왜곡보도하여 정정
4. 공적인물			
1) 대학교수	월간전문지	불성립	- 신청인과의 인터뷰기사인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당했으니 정정하라
2) 도당국회의원입후보자	월간시사지	취하	- 지구당위원장의 이름을 잘못보도하여 정정
5. 공적관심사			
1) 이혼관련자	주간오락지	합의	- 이혼사건 기사에서 한쪽의 주장만을 게재하여 정정보도
2) 자살관련자	월간여성지	불성립	- 기자가 작성한 수기를 신청인이 쓴 것처럼 게재하여 명예훼손
3) 풍속기사관련자	주간오락지	불성립	- 불건전한 질들이 풍속기사에 신청인 사진을 무단게재하여 명예훼손
4) 회귀병관련자	주간시사지	합의	- 아기의 사망원인을 왜곡보도하여 정정

〈표 2〉 1987년도 중재사례에 나타난 권익침해의 유형

직업	대상매체	처리결과	신청내용
1. 인기연예인과 그 친지 1) 영화배우 2) 영화배우 3) 야구선수애인	주간오락지 주간오락지 주간오락지	합의 불성립 합의	- 소문만을 근거로 감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정정 - 허위사실을 보도하면서 가족들까지 흥미거리로 삼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하라 - 유명프로선수의 결혼상대자인양 보도되어 명예훼손
2. 기업관련인물 1) 상가주인 2) 주요주주	중앙일간지 경제일간지	취하 취하	- 악덕업주인양 보도되어 명예훼손 되었다 - 주주들의 항의소동으로 쫓겨났다고 허위 보도하여 정정
3. 공직자 1) 경찰관	중앙일간지	취하	- 경찰관이 주부를 폭행했다는 허위기사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4. 공적인물 A) 대학교수 1) 대학총장 2) 대학교수 3) 대학교수 B) 공공단체임원 1) 연극협회 2) 체육회 3) 치과의사협회 4) 한국아마추어무선협회 5) 스포츠관련단체	지방일간지 지방라디오 주간오락지 일간오락지 월간전문지 주간전문지 서울TV 주간전문지	기각 합의 취하 취하 취하 불성립 불성립	- 유령단체의 유인물만을 근거로 허위보도하여 정정 - 범죄피의자 허위진술한 범행동기를 확인 없이 보도하여 정정 - 만화학원 광고등에 성명과 사진을 도용하여 정정보도 - 왜곡보도로 연극협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 사전승인없이 무단부계 게재하여 명예훼손 - 칼럼에 의한 인신공격기사로 명예를 훼손하여 정정 - 수해때 헬기구조요청 무선사의 이름이 잘못 보도되었다고 정정요구 - 당 협회가 갖가지 횡포로 선수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됐다고 정정요구
5. 공적관심사 1) 시국사건관련 2) 시국사건관련애인 3) 가수지망생 4) 교과서연구가 5) 시위사건관련 6) 유전병환자 친지 7) 취직관련 8) 풍속관련 9) 존속상해관련 10) 독신문제관련	주간여성지 월간여성지 월간여성지 주간오락지 통신 중앙TV 월간전문지 주간오락지 지방일간지 월간여성지	합의 불성립 합의 취하 취하 취하 불성립 취하 취하 합의	- 허위사실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하여 정정 - 욕필수기인 것처럼 신청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정정보도 - 허위고백수기에 신청인의 사진까지 무단 게재하여 정정보도 - 대중가요의 저질시비에 관련 기사가 명예훼손이라고 정정요구 - 사적 이유가 동료근로자에 의해 쫓겨난 것처럼 보도되었다며 정정요구 - 다운중후군이 유전질환이라고 단정보도하여 환자부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정정요구 - 기자가 임의로 작성한 인사체험기에 이름과 직장명을 도용해 정정보도 - 가정집을 귀신디스코홀이라고 허위보도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정정하라 - 아들의 피의사실을 보도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적시,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사과하라 - 촬영시 밝힌 목적과는 달리, 독신녀 문제 특집에 신청인의 사진을 실어 사과문 게재

2. 기업관련 인물 사례

기업관련 인물 사례를 보면 직업으로는 운송 관련업이 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언론매체는 총 12건 중 6건이 일간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월간지(2건), 텔레비전(2건), 주간전문지(2건)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8건으로 67%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합의 3건, 불성립 1건이다. 취하사례 8건 중 5건이 자진 취하인 것이 흥미롭다. 다시 말하면 기업관련 인격권 침해사례는 주로 일간지에서 야기되며, 중재가 합의되기 보다는 취하를 하는 경향이 높고, 그 취하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관련 사례는 공익기준의 설정 이전에 제소를 했던 당사자들이 왜 자진 취하를 했는지의 원인추적을 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한편 불성립된 사례인 「월간(해양한국)의<이달의 기상도>란 사례」를 들어 공익기준을 모색하여 본다. 신청인은 「기사가 당 협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왜곡 보도하여 명예를 손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 신청인 주장은 「(이달의 기상도)란은 사실을 보도하기 위한 난이 아니라, 현상의 사실에 대한 본 연구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고정란으로, 견해가 다르다고 사실의 왜곡으로 단정하여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공익기준설정의 관건이 되는 것은 「사실보도」와 「견해표명」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과 아울러 견해표명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3. 공직자관련 사례

공직자관련 사례는 총 45건 중 3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 보면 경찰관과 편도공무원 그리고 전 대통령 일가에 관련된 인물이다. 한편 경찰관과 철도공무원은 직위가 모두 하위직이고 문제가 된 매체는 일간지이며, 처리결과는 모두 취하로 나타났다. 사례내용은 사고사건과 폭행사건에 관련된 오보나 허위보도로 구성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이론적 정립이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공직자와 관련된 분쟁사례가 우리 사회에 적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한편 공직에 입후보한 자에 관한 사례가 1건 있으며 그 내용은 위원장의 이름을 잘못 보도한 것이었다.

4. 교직자관련 사례

교직자와 관련된 직업은 4건으로 모두 대학교수로 분포되었다. 처리결과는 불성립, 기각, 합의, 취하가 각 1건으로 되었으며 문제가 된 언론매체도 월간 오락지, 지방일간지, 지방라디오, 월간전문지 등으로 다양하다. 공익기준의 설정을 위해 중재가 불성립된 「월간 한국인삼 1986년 7월호」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피 신청인과 인터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기사에 관련된 어떤 자료도 월간 한국인삼 측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기사의 내용은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 유치한 표현을 쓰고 있고, 과학적 오류가 많아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결과 피 신청인은

「일본에서 발행된 (고려인삼과 건강)이란 책에서 전재하였다」고 정정 보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중재 부에서는 허위문답식 기사를 게재하였다며 피 신청인에게 시정권고를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공익기준의 설정은 사실 보도판단여부로서 이미 다른 책에 허위로 되어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재하였을 경우이다. 중재부의 시정권고를 보면, 이러한 예는 허위보도라고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공공단체 임원 관련 사례

공공단체임원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총 5건 중 취하가 2건, 불성립이 3건으로 합의를 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성립된 사례 중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한국아마추어무선협회」 사례를 들 수 있다. 신청인은 수재 관련 보도에서 무선사의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정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 신청인은 주장하기를 「수해주관부서인 대한적십자사에서 아마추어 무선 사들 중 가장 활약이 큰 무선사를 추천 받아서 취재했다며, 문제가 된다면 대한적십자사의 추천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도의 잘못은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추하면 오보라 할지라도 기자에게 고의가 없으면 면책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6. 공적 관심사관련 보도

공적 관심사에 관련된 사례는 총 14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이다. 문제가 된 매체를 보면 주간지 (여성지, 오락지)와 여성월간지가 10건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다. 처리결과로 보면 14건 중 합의가 5건, 취하가 5건, 불성립이 4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문제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인간흥미 (human interest)기사로서 이혼, 자살, 희귀병, 대중가요문제, 독신녀, 존속상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재사례에 나타난 공적 관심사란 주간 오락지와 월간여성지가 보도하는 인간흥미기사로서 인기연예인사례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V. 결론

중재사례를 통해 본 국민의 알 권리와 시민 권익침해의 분쟁현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시민권익침해의 대상이 된 언론매체는 주로 주간 오락지와

여성월간지이며, 그 내용은 인기연예인과 일반시민을 취재대상으로 하는 인간흥미기사라는 사실이다. 반면 공직자에 관련된 사례는 적으며, 그 직위는 하위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민권익침해의 내용인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구분의 모호선이다.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를 구성하는 요건에 있어서 중재사례만으로는 그 구분이 애매하였다. 이는 집단주의적, 권위주의적 동양사회에서 개인주의적, 공리주의적 서양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셋째, 국민의 알 권리와 시민의 권익침해를 해결하는 법제적 고리인 「공익」 개념은 절대적, 이상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현실주의적 과정의 개념으로서 도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익은 이익당사자간의 윤리적 합의에 의해 설정되는 개념이며 공론형성의 주체인 언론인이 공평, 공정, 공유의 윤리관을 확고히 지닐 때에 그들의 명예는 더욱 빛날 것이다.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동 대학원 (박사)

□ 저술: 「언론자유의 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한국의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방송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외

□ 현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